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등 국민의 정서를 <u>항양하</u> 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件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 물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u>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u> 에게 최소 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3의2. <u>반려동물</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u>정하는 자</u>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u>변</u> 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생략)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u>사역(使役)하</u> <u>고 있거나 사역</u> 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u>농림축</u>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 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 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u>반려동물</u>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32조에 따라 가</u> 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 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 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 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u><신 설></u>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신 설></u>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 (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 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 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아니한 소유자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아니한 소유자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 석 제>
제46조(벌칙) ① <u>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u> <u>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u>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46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신 설></u>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 는 학대행위를 한 자
<u><신 설></u>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1. <u>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u> 위반하여 동물 을 학대한 자	1. <u>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u>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 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 에 게재한 자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 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 선전한 자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 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 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 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물을 대여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 ·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 을 제공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u><신 설></u>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 47조(과태료) ①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 2의5. (생략)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 2의5. (생략)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한 소유자등	